# 2024년 경기아트센터 종합감사 -감 사 결 과 보 고 서



2024. 5.

경 기 도 [감 사 관]

# 목 차

١.	감사실시 개요	1
Π.	감사대상기관 현황	2
III.	감사결과	3
1.	. 감사결과 총괄	3
2.	. 종합의견	3
3.	. 적극행정 면책처리 현황	4
4.	. 주요 지적사항	4
5.	. 우수사례	13

【별 첨】 처분요구서

# I 감사실시 개요

# 감사배경 및 목적

- 「공공감사에 관한 법률」제19조 및「경기도 감사규칙」제3조·제10조 등에 따라 경기아트센터에 대하여「2024년 경기도 공공기관 감사 기본계획」에 반영하여 종합감사 추진
- '23년 감사제보 특정감사를 실시했음에도 '24. 1월 주무부서 지도・점검 결과에 따른 부적정 사례가 다수 적발되어 조속히 기관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 필요
- 도정 위험요인 사전 예방 및 최소화로 도정에 대한 도민신뢰 제고

#### 감사대상 및 중점사항

- (감사대상) 경기아트센터
- (감사범위) 이전 종합감사 자료작성 기간('22. 3. 31.) 이후 부터 '23. 12. 31.까지 업무처리 전반
- (중점사항)
  - 기관 주요 사업 추진 적정성
  - 예산의 편성 및 집행, 공사·용역·물품 등 계약업무 실태
  - 직원(공무직, 비정규직 포함) 채용\*, 승진·인사 분야
  - \* 2024년(2023년 실적) 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 계획에 따른 채용실태 점검 포함
  - 직원 복무 및 근태 관리(수당, 여비, 출장, 관용차량 등)
  - 청탁금지, 이해충돌 방지, 직장 내 괴롭힘 · 성희롱 예방 교육 및 처리 적정성 등
  - 공개감사제도 운영에 따른 기타 감사제보 사항 등

# 감사실시

- (**감 사 반**) 감사총괄담당관(총괄) 등 1개팀 7명 (도민감사관 2명 별도)
- (**사전준비**) 감사계획 통보(2024. 1. 19.), 감사자료 제출(2024. 2. 2.)
- (감사기간) 2024. 2. 21. ~ 3. 15.(17일간) ※ 사전조사: 2. 14. ~ 2. 20.(5일간)

# Ⅱ 감사대상기관 현황

# 기본현황

- (설립목적) 문화예술의 진흥, 도민의 문화욕구 충족, 문화예술 공간 운영, 경기도예술단 운영 등을 통하여 경기도민의 문화욕구 충족과 경기도 문화예술 진흥에 기여
- (설립일) 2004년 4월 7일
- (설립근거) 「경기아트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」
- (기 관 장) 서춘기 (임기: 2023. 1. 31. ~ 2025. 1. 30.)

# 조직 및 인력

- (조 직) 1처 2실 3본부 12팀 4예술단
- (인 력) 정원 437명 / 현원 402명 (본부 87, 경기도예술단 258, 공무직 57)

# 예산현황

(단위: 백만 원)

연도	2021년	2022년	2023년	2024년
예산액	48,796	46,282	54,004	53,482
출연금 (비중)	38,489 (78.88%)	38,935 (84.13%)	40,669 (75.31%)	40,782 (76.25%)

# 주요사업 현황

- 경기도예술단 레퍼토리 공연사업
- 찾아가는 문화복지 공연, 문화예술교육사업
- 경기아트센터 공연예술 축제
- 경기도예술단 국내외 교류사업
- 경기아트센터 제작·기획 공연, 국악원 제작·기획 공연 등

# Ⅲ 감사결과

# 1. 감사결과 총괄

- 행정상 20건 (주의 3, 시정 3, 개선 3, 통보 10, 기관경고 1)
- 신분상 34명 (중징계 2, 경징계 11, 훈계 21)
- 재정상 1건 (회수 60천 원)

(단위: 건, 명, 천 원)

행 정 상					신 분 상			재 정 상				
계	주의	시정	개선	통보	기관경고	계	징계	훈계	계	회수	부과	기타
20	3	3	3	10	1	34	13	21	60	60	_	1

# 2. 종합 의견

- 경기아트센터(이하 "아트센터"라 한다)는 2022년 종합감사, 2023년 감사 제보 특정감사를 실시했음에도 2024년 1월 주무부서 지도·점검 결과에 부적정 사례가 다수 적발되어 기관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를 추진하여 근무기강 확립 및 공정한 기관운영 체계 마련 필요
- 특히 기관장의 업무공백 장기화\* 및 코로나19에 따른 문화예술 분야 장기 침체로 현재에 안주하는 분위기 확산과 포스트 코로나를 위한 문 화예술 활성화 등 개선방안 마련에 총체적 노력과 의지 부족
  - \* 기관장 공석기간: 2022. 1. 11. ~ 2023. 1. 30.
- 종합감사 결과, 직무관련 업체로부터 금품수수, 공용공간 및 물품의 사적 사용, 공용차량 사적사용 등 근무기강 해이에 따른 개인 비위가 다수 발 생하여 관련자 징계 처분 및 복무기강 확립 등 재발 방지 방안 마련 요구
- 또한, 문서관리 규정이 있음에도 업무추진 편의 등을 이유로 다수의 수기 문서를 생산하고 이를 제대로 보관·관리하지 않았고, 문서 이관·폐기 시에도 규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임의로 폐기하여 기관경고 처분

○ 이외에도 사업 추진 관련 업무회피 및 사업 중단, 소송관련 쟁송사무 처리 규정 미준수, 유연근무제·휴가 사용 관리 부적정 등 위법·부당한 업무처리를 한 담당자는 문책하고, 단순 업무 미숙으로 발생한 규정 미준수 등 사항은 시정·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

# 3. 적극행정 면책 처리 현황

○ 해당없음

#### 4. 주요 지적사항

# 3 청탁금지법 등 위반(직무 관련 업체로부터 금품 수수)

- 20☆☆년 ⑥⑥⑥⑥팀은 '♠◆필름〈> 제작' 사업 추진을 위 해 ▲▲▲▲ 와 **총**△△ 계**약**(18백만 원)을 하였고, ♠♠♠♦단원 **A** 등 5명과 ◎◎◎ 및 출연 계약을 맺고 1인당 150만 원 지급
- A는 지급내규에 따라 ⑩⑪⑪ 및 출연료 사례로 150만 원의 계약금을 받았음에도, 총안무 계약업체인 ▲▲▲▲로부터 별도의 사례비 명목 으로 200만 원을 추가로 수령\*
  - \* 「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」제8조(금품등의 수수 금지) 위반
    - 업무관련자 신분상 조치**(중징계 ○명)**
- 「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」 제8조 제2항을 위반한 사실은 같은 법 제23조 제7항에 따라 「비송사건절차법」에 따른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 **(통보)** 
  - 「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」제8조 제5항을 위반하여 관련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'▲▲▲▲▲'에 같은 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 **(통보)**

# 2 공공기관 공용공간 및 물품의 사적 사용 등

○ ⑩⑪⑪⑪팀 B는 20☆☆년부터 근무 시간을 이용하여 개인 취미활동을 하는 등 근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았고, 20★★년부터 20◎◎년 ○월까지 **아트센터 내 ▼▼창고 일부 공간 및 물품을** 본인의 취미생 활을 위해 장기간 **사적 사용** 

- 업무관련자 신분상 조치**(중징계 ○명, 훈계 ○명)**
- 2022. 5. 19. 「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」시행 이후 제13조를 위반한 사실을 같은 법 제28조 제4항에 따라「비송사건절차법」에 따른 과태료 재판 관할 법원에 통보 (통보)
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8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른 변상금 징수를 지도·감독부서와 협의하여 산정하는 등 징수 방안을 마련하기 바라며 향후 동일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 추진 철저 (통보)

# 3 공용차량 사적사용 및 공용차량 운영관리 업무 부적정 등

- ●●●●● 소속 임원 차량 운전기사는 20★★년 ◎월부터 같은 해 ●월까지 ☆차례에 걸쳐 공용차량을 출・퇴근 목적으로 사용\*하였고, 20★★년 ○월부터 같은 해 ◇월 기간 중 공용차량 운행 후 차량운행일지 작성을 누락하여 「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」 및 아트센터 「공용차량 관리규칙」을 위반
  - \* 임원 수행 업무를 종료하고 센터로 복귀하여 퇴근 시간 타각 후 공용차량을 이용하여 퇴근 하였다가 출근하는 형태로 공용차량 사용

### 조치 사항

- 업무관련자 신분상 조치(**경징계 ○명, 훈계 ○명)**
- 사적 사용으로 확인된 운행 거리(◈km내지 ◉km)에 대하여 유류비 환수 (시정)
- 공용차량 관리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공용차량 관리 운영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 (통보)

# 4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미이행에 따른 이해충돌방지법 위반

-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안 날부터 14일 이내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
  - ※ 이해충돌방지법은 직무 수행자 대체가 어려운 경우 그 직무를 그대로 수행하게 할 수 있으나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확인·점검 받도록 되어 있음

- 업무관련자 신분상 조치(**경징계 ○명)**
- 사적이해관계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「비송사건절차법」에 따른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 **(통보)**

#### 5 인사위원회 재적위원 임의 제외 등 인사규정 위반

특별한 이유가 없는데도 임의로 총 ◈회에 걸쳐 당연직 위원 또는 출석하지 않은 위촉직 위원을 재적에서 제외하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고,
 그 중 ●회의 인사위원회는 의사정족수(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)에 미달

조치 사항

- 업무관련자 신분상 조치**(경징계 ○명, 훈계 ○명)**
- 의사정족수가 미달함에도 심의·의결된 ♠ 안건은 적법하게 다시 처리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 **(통보)**

#### 6 목적에 위배된 직위해제 운영

- A에 대하여 단순히 검찰이 구약식 결정(벌금 100만원)을 통보하고, A가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자 형사 사건에 계류 중이라는 이유로
  ◇회에 걸쳐 약 ◇◇개월간 직위해제 처분을 하였고,
- 국민권익위 권고안을 통해 A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이 그 목적에 벗어 난 것이라는 점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재판이 종료\*될 때까지 계속하여 직위해제 처분을 연장

\* `2★. ★. ★★. 무죄 판결

조치 사항

- 업무관련자 신분상 조치(경징계 ○명, 훈계 ○명)
- 국민권익위 권고안이 규정에 반영 될 수 있도록 검토, 직위해제 제도 목적에 맞게 인사운영을 하도록 통보 **(통보)**

#### 7 주차요금의 부당한 면제 처리 관련 행동강령 위반 등

○ ■■■■본부장 A는 20☆☆년 ~ 20☆☆년 본인 소유의 차량(▲대)을 주차요금 면제 대상인 직원 정기권 차량으로 변경 등록(2회) 하였으며, 근무 (주말 시간외근무 포함) 중 직원 정기권 차량으로 등록된 차량 외 본인 소유 차량(일반권)으로 아트센터 주차장을 사용하면서 주차요금(8회, 60,000원)을 면제 받음

- 업무관련자 신분상 조치(경징계 ○명)
- 부당하게 면제한 주차요금 총 60,000원에 대하여 환수 조치 (시정)
- 임직원에 대한 행동강령 등 교육 시 「주차장 관리 운영 세칙」의 주차요금 면제 대상 등 규정 준수와 관련한 내용을 포함하여 교육을 실시 (통보)

# 8 문서관리 소홀 및 문서관리 규정 미준수

- 아트센터는 근거 규정 및 중요도에 상관 없이 업무추진 편의를 이유로 다수의 수기문서를 생성하면서도 규정에 따른 문서이관, 폐기 등 주기적인 문서관리를 하지 않고 있음
- 20☆☆. ☆. ☆. ◇◇◇◇目은 '♤♤문서 파쇄 실시안내'를 통해 문서를 폐기하면서 폐기하는 문서의 종류 및 수량 등을 표시한 문서의 목록을 문서처리부서에 통보하지 않는 등 문서규정 제41조의 문서폐기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폐기함

# 조치 사항

- 경기아트센터 문서규정」등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문서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에 대하여 「경기도 공무원 등 적극행정 면책 및 경고 등 처분 에 관한 규정」제14조에 따라 「경고」조치하오니, 향후 이와 같은 사 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 (기관경고)
- 「경기아트센터 문서규정」에 따른 문서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문서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인 지도·감독과 직원 교육을 실시하는 등 관련 업무 철저 (통보)

# 9 △△△△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 관련 쟁송사무처리 규정 미준수

○ 20★★. ★. ★★. △△△△팀은 소송 수행 중인 '△△△△ 구제 재심판정취소'관련 원고인 아트센터가 패소한 사실을 확인하고 항소 절차를 진행하면서 사장 보고 및 위원회 심의·의결 절차 없이 항소장을 제출하여아트센터「쟁송사무처리규정」을 미준수

- 업무관련자 신분상 조치(**훈계 ○명)**
- 소송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「경기아트센터 쟁송사무처리 규정」에서 정한 절차와 기준을 준수하여 소송 업무 추진 철저 (주의)

# 10 공공기관 경영평가 총인건비 인상률 지표에 공연수당 미산입

- 20☆☆년('☆☆년 실적)부터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총인건비 인상률 평가지표에 공연수당을 인건비에 포함하도록 변경되었는데도 공연수당을 제외한 총인건비 인상률로 20★★년('◇◇년 실적)까지 제출
- 공연수당을 포함하여 총인건비 인상률을 재산출한 결과 20☆☆년부터 20☆☆년 및 20★★년은 인상률 기준을 준수하고 있으나 20☆☆년에는 공연수당을 포함한 총인건비 인상률이 ○.○○%로 인상률 기준인 ◎.
  ◎%를 ◇.◇◇% 초과하여 미준수

### 조치 사항

- 업무관련자 신분상 조치(**훈계** ○**명**)

- 경영실적보고서에 공연수당을 제외한 총인건비 인상률 지표를 작성·제출한 경기아트센터에 경영평가 실시계획 및 매뉴얼에 따라 적절한 조치 (통보)

# 11 원천세 납부기한 초과에 따른 가산세 지급 부적정

- 20★★. ★. ★★. 지방소득세 등 원천세 납부 기한(20★★. ★. ☆☆.)이지나 가산세(2,739,000원)를 포함한 금액을 납부하면서 관서운영비 예산으로 지출
- 직원 급여 지출은 가팀, 지방소득세 등 원천세 납부는 나팀에서 추진 (이원화)하여 관련 지방소득세 신고 등에 필요한 개인별 월급 명세서 등 자료가 가팀에서 나팀으로 공유되지 않아 신고 금액 수정이나 불일치 발생 시 즉시 확인이 어려워 납부 기한 초과

#### 조치 사항

- 업무관련자 신분상 조치(**훈계** ○명)
- 이원화 되어 있는 직원 급여업무와 원천세 신고·납부업무를 일원화하거나 직원 급여세부내역을 원천세 담당에 공개하는 등 자체 개선방안 마련 (통보)

# 12 20☆☆년 경기아트센터 ◎◎◎◎ '육육육' 사업 추진 부적정

○ 20☆☆년 ○○○○ '♀♀♀'사업은 사업계획 수립 후 사업비 200백
 만 원 중 195백만 원을 충전금으로 지원하고자 사업 계좌로 이체하였으나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고, 반납 등 후속조치를 하지 않은 채

195백만 원을 사업 계좌에 그대로 둠

조치 사항

- 업무관련자 신분상 조치(**훈계 ○명)**
- 20☆☆년 경기아트센터 ◎◎◎◎ '♣♣♣' 사업과 관련하여 계좌에 남아있는 미사용 예치금 195,000천 원을 절차에 따라 세입 조치 (시정)

# 13 □□□□ 제보 사항에 대한 처리 절차 미준수

○ 20★★. ★. ★. 09시 32분에 접수된 □□□□□ 제보 건에 대하여 가팀은 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결과를 입력(통보)하지 않고, 제보 내용의 당사 자인 A가 같은 달 ☆. 19:50분에 임직원 § \$명에 해명 이메일을 발 송한 것을 별도 답변 완료한 것으로 처리하고 □□□□□ 시스템에는 처 리 결과를 입력하거나 종결(각하)처리에 따른 서면 통지도 하지 않음

조치 사항 - □□□□ 시스텀에 처리결과를 입력(20△△. △. △△.)하여 답변함에 따라 시정완료 되었으나 향후 유사 사례 등 재발 방지를 위해 내용 통보 (통보(시정완료))

# 14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자와 수의계약 부적정

- 가팀은 20★★년 '♠♠♠ ♠♠ ⟨△△ ◇◇◇◇◇◇⟩'
  공연의 영상 후반편집 계약을 체결하면서 지방계약법에 따라 일반 개인은 계약상대자가 될 수 없음에도 일반 개인을 계약상대자로 나 팀에 수의 계약을 요청하였고.
- 나팀은 입찰 참가자격에 관한 서류를 확인하지 않고 계약상대자가 될 수 없는 일반 개인과 수의계약을 체결함

- 업무관련자 신분상 조치(**훈계** ○명)
- 앞으로, 일반 개인과 계약 시 입찰 참가자격 유무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후 동일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 추진 철저 (주의)

#### 15 ◉◉ 사건 업무 처리 절차 미준수

- 외부전문가에게 ●●(○○)를 의뢰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○○계획 변경 수립 시 사장 결재를 득하여야 하는데도 가팀은 20★★. ★. ★. 외부전 문가에게 ○○를 의뢰하면서 계획변경에 대한 사장 결재를 받지 않았고. ○○결과에 대하여도 사장 결재를 받지 않음
- 또한 20分分. 分. 分. 외부전문가에게 재○○를 의뢰하면서도 ○○계획 재수립 또는 계획 변경 등에 대해 사장 결재를 받지 않음

조치 사항

- 업무관련자 신분상 조치(**훈계** ○**명**)
- ◇◇◇ ◇◇ 사건 업무 추진 시 관련규정에 따라 절차 등을 준수하여 동일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 철저 (주의)

# 16 경기도◎◎◎◎◎ 창단 사업 추진 부적정

- 20分分년 경기도◎○◎◎◎ 창단을 위해 2억 원을 예산편성 하였으나, 아트센터 정관 및 직제, 정원 규정 등 변경이 수반되는 사항임에도 내부 규정 개정 및 道 사전협의 없이 예산편성・집행
- 창단을 확신하고 인건비(창단 준비단장, 기획자) 70백만 원 / 자산구입(악기, 영상장비 등) 51백만 원 / 기타 잡비 10백만 원 등 총 131백만 원 집행하였으나, 구입한 물품은 「물품관리규정」에 따른 자산 이관 절차 없이 물품 관리부서를 변경하여 물품의 관리를 소홀히 함
- 20♠♠. ♠월 창단을 위한 道 관련부서들과 조직·정원 협의 결과 '부적 정' 회신\* 후 최종결재권자 보고 없이 사업을 중단
  - \* 정원 내 기존 조직을 활용한 창단 및 운영 의견

- 업무관련자 신분상 조치(**훈계 )명)** ※ 징계 시효 도과
- 당초 사용 목적과 달리 사용하는 물품 또는 자산은 규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 사용 (시정)
- 신규 사업 추진 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관계법령 및 사업 추진 절차 등 사업타당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편성 및 사업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 마련 (통보)

#### 17 관리자 초과근무수당 지급 및 운영 부적정

- 아트센터는 근로기준법 및 2015년 '道 산하 공공기관 초과근무수당 제도 개선 계획'에 따라 소속 관리자에 대해 초과근무수당 지급을 중단하고 관리업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, 감사일 현재까지 관리자(2급~3급 관리자에 해당하는 본부장 또는 팀장)에게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음
  - ※ (관리자범위) 일반업무에 대한 방침 및 소관업무에 관한 세부계획 수립, 집행 등에 대한 결정권과 소속 직원에 대한 출장, 연장근로 지시, 휴가 승인 등 노무관리상의 지휘, 감독 권한을 가진 자(대법원판례 88다카2974, 1989.2.28.)

# 조치 사항

- 「근로기준법」 및 2015. 3. 16. 경기도에서 시행한 '道 산하 공공기관 「초과근무수당 제도」 개선 계획'에 따라 관리자에 대해 초과근무수당 지급을 중단하고, 관리업무수당(또는 직책수당)을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 (개선)
- '관리자범위' 특정이 불가한 경우 고용노동부 또는 노무관련 전문가의 해석을 구하여 '관리자범위'를 특정한 후 규정 마련 (통보)

# 18 유연근무제(선택적 근무시간제) 운영 부적정

- 유연근무제(선택적근무시간제) 운영은 직원의 복무 및 근태와 관련한 사항이지만, 이사회 승인과 경기도의 협의 등 절차를 이행하여 아트 센터 제규정에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, '개정 근로기준법 관련 한 시적 운영지침(본부직원, 예술단원)합의서'에 근거하여 운영
- 「경기아트센터 취업규정」제20조의 '지각 3회를 하였을 때에는 1일 결근' 조문은 '지각', '결근'이 향후 보수의 지급제한 및 근무 평정에 감점요소로 반영되는 것을 감안할 때 특별한 근거 또는 기준 없이 과도하게 근무상황관리를 규정
- 「경기아트센터 공무직 관리규정」제40조 제4항은 결근시 기본급과 기 타 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, **결근 횟수에 따른 기본** 급과 제수당을 얼마나 제한하는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음

- 특별한 이유 없이 직원 근태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 「경기아트센터 취업규정」제20조의 규정을 개선하고, 직원에게 지급된 유급휴가를 활용하여 지각한 시간만큼 차감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·운영하는 방안을 마련 (개선)
- 또한, 선택적 근무시간제(유연근무제) 운영은 직원의 복무 및 근태와 관련한 사항으로 이사회 승인과 경기도의 협의 등 절차를 이행한 후 아트센터 제규정에 명시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 (통보)

# 19 직원 휴가(특별휴가, 공가) 사용 · 관리 부적정

- 일반직-공무직-예술단원의 특별휴가 규정 불일치 및 단체협약의 중복된 규정\*으로 (외)조부모 사망 시 일부 직원만 본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 사용함으로써 특별휴가 제도 운영 및 사용의 명확성과 일관성을 저해
  - \* (일반직, 공무직)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·외조부모 사망 시 특별휴가 3일 (예술단원, 노조원)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사망시 특별휴가 5일 / 외·조부모 사 망시 특별휴가 3일
- 헌혈은 공가 사용대상이 아님에도 **헌혈 후 공가 사용**

조치 사항

- 각 휴가의 사용이 규정에 맞게 이루어지도록 관리·감독하고, 「경기아트센터 예술단 운영규정」의 특별휴가 관련 중복규정을 조속히 개정 (시정)
- '20☆☆년 단체협약서'에 명시된 특별휴가 규정 '제49조(특별휴가)의 표 <특별휴가대상과 기간>'은 노동위원회에 해석을 구하여 해당 규정을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근거를 마련 (통보)

# 20 출장 관리 부적정

- 근무지 외 출장의 경우 내부결재를 통해 출장신청을 하고 있으며, 출장 신청과 동시에 별다른 증빙자료 없이 출장여비 청구
- 「경기아트센터 취업규정」제36조에 따르면 직원이 귀임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복명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, 단서조항으로 경미하거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구두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 아트센터 임직원은 출장 복귀 후 복명서 제출 미이행

- 규정에 따른 출장과 여비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불명확한 규정을 개정하고, 규정과 절차가 준수될 수 있도록 임직원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·감독과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,
- 「경기아트센터 문서규정」에 따라 전자문서시스템을 통한 관내 출장신청 및 문서관리 방안을 마련 (개선)

# 5. 우수사례

#### 찾아가는 문화복지 수혜 인원 확대 등 지역민 예술향유권 신장 도모

- 찾아가는 문화복지 공연 수혜 인원 2022년 49,068명에서 2023년 91,093명 으로 186% 성장



### □ 주요 추진현황

○ 수혜자의 니즈에 맞춘 대중예술 중심의 예술이음 콘서트를 2023년 최초 기획·도입하여 도 전역에서 5회에 걸쳐 대형 대중예술 콘서트 추진으로 2023년 총 12,800명이 관람하는 등 지역민 예술향유에 기여



#### □ 향후계획

○ 공모를 통한 도내 신규 우수 예술단체 발굴 활성화 및 '더 고른' 공연 기회 부여로 지역문화 자생기반 조성 ➡ 도민의 예술향유권 다양성 확보